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
347p [㉠ 공제 가능 의료비] 중	개념,공식-설명	수정 전	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	
		수정 후	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	
		수정사유	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5 제1항 제7호 개정 [2024년 2월 29일]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